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 설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찬식 의원

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!
주찬식 의원입니다.

지난 3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
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공공
하수관로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’과 ‘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자 중 수
급권자’에 대한 관련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
는 것이며, 2008년 7월 30일 동 조례 전부개정시 정비 누락된 ‘배수설
비 설치공사의 대행’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.

또한, 현행 조례의 모순을 바로잡아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,
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과 오기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이
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입니다.

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